2016 January
Vol. 37
www.ftapass.or.kr

CONTENTS

FTA NEWS
2016년 사용자교육 실시 및 현장지원 신청 안내

FTA STUDY
한-중국 FTA 분야별 원산지특례

FTA-PASS 활용
자주하는 질문 사례
- 상품 등록하기

FTA-PASS 유용한 기능
문서수발신기능 활용하기III

FTA-PASS 유용한 기능
문서수발신기능 활용하기IV

FTA NEWS

2016년 정기교육 연간일정

월	날짜(지역)	월	날짜(지역)
1	없음	7	12(부산), 13(대구)
2	22(서울)	8	22(서울)
3	21(서울), 23(광주)	9	21(광주), 22(서울)
4	19(부산), 20(대구)	10	18(부산), 19(대구), 24(서울)
5	23(서울)	11	24(서울)
6	23(서울)	12	없음

※ 교육장 위치는 공지사항 참조 (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2월 정기교육 안내

"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 능력 업그레이드!"

- 대상: FTA-PASS 사용자, 사용 예정자
- 신청: FTA-PASS 홈페이지 > 기업지원 > 정기교육 메뉴

  *FTA-PASS 홈페이지 : www.ftapass.or.kr
- 문의: 사후관리팀 (Tel.031-600-0770)

  ※ 일시와 장소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FTA-PASS 현장지원

기업에 직접 방문하여, FTA-PASS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
- 대상: FTA-PASS 사용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면 누구나

  ※ 지원 기업 수가 한정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: FTA-PASS 홈페이지 > 기업지원 > 현장지원 메뉴

현장지원 신청방법

현장방문교육 신청서

신청구분	◉ 현장방문 ○ 협력사 교육 (10개 기업 이상)	방문요청일	2016-01-21
기업명	(주)테스트기업	기업코드(사업자번호)	custom49 (134-81-02523)
대표자명	임대표	업종 / 업태	선택
자본금 / 매출액	만원 / 만원	직원수	명
대표전화	000-000-0000	FAX	000-000-0000
주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	인증수출자여부	◉ 업체명 ○ 품목별 ○ 비대상
적용협정	□전체협정 □한-EFTA □한-EU □한-뉴질랜드 □한-미국 □한-베트남 □한-싱가포르 □한-아세안 □한-인도 □한-중국 □한-칠레 □한-캐나다 □한-콜롬비아 □한-터키 □한-페루 □한-호주		
국내거래처	○ 없음 ○ 5개 미만 ○ 5개 이상	대표품목(품명/HS)	품명 : HS (6단위) :
사용중인 시스템	FTA-PASS (○ PCB ◉ WEB용)	업무시스템(ERP)활용여부	○ 활용 (ERP제품명 :) ○ 미활용
담당자(신청자) 성명	임상욱	담당자(신청자) 직위	대리
담당자(신청자) 부서	영업팀	담당자(신청자) 전화번호	000-000-0000
담당자(신청자) HP		담당자(신청자) E-Mail	user49@test.go.kr
방문장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		
요청내용	□ 시스템 사용법(시스템 처음 사용자, PC용에서 WEB용 전환, 한정경자 및 관리, 시스템 관리 및 활용 등) □ 사후검증 대비(원산지 확인서, 증명서, 소명서 등 증빙서류관리 및 인증수출자 관련) □ 기초자료작성 (기존정보, 거래정보 메뉴의 Excel 데이터 작성방법) □ 원산지판정결과 문의(세번변경, 부가가치한정 등) □ 확인서 송수신 및 기관발급 □ 중점요청사항(방문 건 확인사항이오니 필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.)		

뒤로 저장

- [기업지원 > 현장지원 > 신청하기 > 신청서 작성 > 저장]

  ※ 방문일정은 유선으로 협의 후 확정됩니다.

FTA STUDY

협정별 원산지 규정
- 한-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분야별특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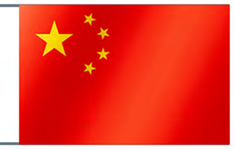

□ 한-중국 FTA

협정국 /발효일자		중국 2015.12.20	누적기준	재료누적 인정	
원산지 증명서	발급방식	-기관발급	최소허용기준	일반품목(가격)	10% ※15~24류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와 상품의 소호가 다를 경우 최소기준 허용
				섬유(중량·가격)	10%
	서식	-양국 간 통일 증명서식 (*미화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)	중간재	중간재 불인정	
원산지결정기준(부호)		WO : 완전생산물품 WP :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PSR :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 OP : 역외가공 물품	간접재료	고려하지 않음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제외하고 결정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제조경비에 계상	
부가가치비율 산출공식		BD= (본선인도가격(FOB)-비원산지재료가치) / 본선인도가격(FOB)	부속품·예비부분품·공구	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	제외 원산지별 구분 계상
인증수출자 혜택		원산지증명서 발급 시, 첨부서류 제출 생략	소매용 포장·용기	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	제외 원산지별 구분 계상
원산지검증	검증방법	간접검증(필요시 직접검증)	운송(수송) 포장·용기	세번변경기준, 부가가치기준 모두 제외	
	검증주체	수입국 세관			

FTA-PASS 활용

자주하는 질문 사례

상품 등록하기

Q.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기업은 FTA-PASS를 통해 어떻게 원산지관리를 하나요?

A. 구매한 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바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,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서류를 발급합니다.

▶ 등록하기

<FTA-PASS 등록정보 비교>

O:필수 △:선택 X: 해당없음

	메뉴	제품	상품
기준 정보	거래처	O	O
	물품정보	O	O
	자재명세서	O	X
	HS코드	O	O
거래 정보	구매단가	△	O
	근거서류	△	O
	판매단가	△	△

<상품등록 시 주의사항>

* 상품의 경우 자사에서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자재명세서(BOM)를 알 수 없으므로 **자재명세서**를 등록하지 않습니다.

* 상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및 근거서류 등록이 필수입니다.

* 상품은 **원재료**로 등록하기 때문에 구매단가(재고관리형의 경우 구매원장)를 등록해야 합니다.

<Check Point 1> 상품등록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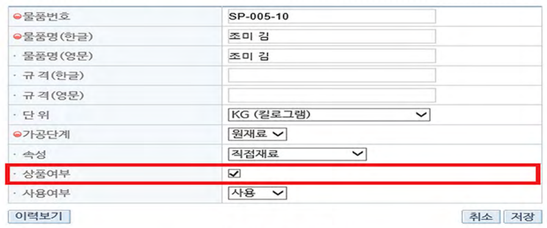

<개별등록 화면>

<엑셀양식 작성>

[거래정보>물품정보]에서 해당 물품을 '상품'으로 등록합니다.
- **개별등록** 시 우측 상세정보에서 '상품여부'에 체크
- **엑셀파일로 일괄등록** 시에는 '원재료 상품여부'란에 Y를 입력합니다.

※ 상품의 경우 원재료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.

가공단계	원재료속성	상품여부
원재료(PT01)	직접재료(PA01)	상품여부 체크(Y)

<Check Point 2> 근거서류 적용

[거래정보>근거서류]

		근거번호	❶ 매입처	물품번호	물품명	규격	HS CODE	적용협정	원산지	결정기	❷ 시작일	종료일
1	☑	001	한라	SP-005-10	조미 김		210690	한-인도	한국	WO	2016-01-01	2016-12-3

[거래정보>근거서류]

		물품번호	물품명	규격	단위	매입기준일	매입처	구매단가	가산조정액
1	☑	SP-005-10	조미 김		KG	2016-01-01	한라	950	0

정보 등록 후 판정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(KR)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.

❶ 근거서류에 등록한 매입처와, 구매단가에 등록한 매입처가 동일해야 합니다.

❷ 근거서류의 포괄기간 내에, 구매단가의 매입기준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FTA-PASS 유용한 기능

문서수발신기능 활용하기

2탄 : 원산지요청서 수신 및 원산지확인서 발송

고객사로부터 원산지요청서를 수신한 기업은 해당 물품을 자사의 FTA-PASS에 등록되어있는 물품정보와 연결한 후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.
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고객사에 발신합니다.

<원산지요청서 수신 및 원산지확인서 발송하기>

<STEP 1>
1. FTA-PASS를 통해 고객사로부터 원산지요청서를 받은 기업은 [서류관리>문서수발신]의 수신함에서 요청서를 수신합니다.

<STEP 2>
2.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품목과 자사의 물품번호를 연결 시켜줍니다.
3. 요청 하는자의 물품번호와 자사 물품코드 연결이 필요합니다. 라는 오류메시지가 나올 경우 ❷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물품번호를 연결해 줍니다.
   (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물품번호에 고객사의 물품번호와 자사의 물품번호를 연결하여 등록)
4. 모든 물품에 대한 정보 연결 후 원산지확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<STEP 3>
5. 판정이 완료된 요청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후 ❹문서 발신 버튼을 클릭하여 고객사로 발신합니다.*
   단, 원산지판정 결과가 없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판정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반드시 [판정관리]에서 판정을 먼저 진행합니다.

*서류발신 방법의 경우 '문서수발신기능 활용하기 1탄('15년 12월 호)의 요청서 발신 방법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FTA-PASS 유용한 기능

문서수발신기능 활용하기

3탄 : 원산지확인서 수신 및 근거서류 연결

협력사로부터 FTA-PASS를 통해 원산지확인서를 수신한 기업은 [문서수발신]에서 근거서류 등록 기능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[거래정보>근거서류]에 엑셀 일괄업로드 등 추가 과정이 불필요합니다.

<원산지확인서 수신 및 근거서류 연결하기>

<STEP 1>

1. FTA-PASS를 통해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[서류관리 > 문서수발신]의 수신함에서 ❶원산지확인서를 수신합니다.

2. 원산지확인서 전환 페이지로 이동 해 수신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서류로 등록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.

<STEP 2>

3. 협력사에서 보내온 원산지확인서의 물품과 자사의 물품을 연결해 줍니다.
4. 자사 물품번호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. 라는 오류메시지가 나올 경우 [조회]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번호를 연결해 줍니다. (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물품번호에 협력사의 물품번호와 자사의 물품번호를 연결하여 등록)

5. 물품정보 연결 후 ❷[근거서류등록]버튼을 통해 근거서류 등록을 완료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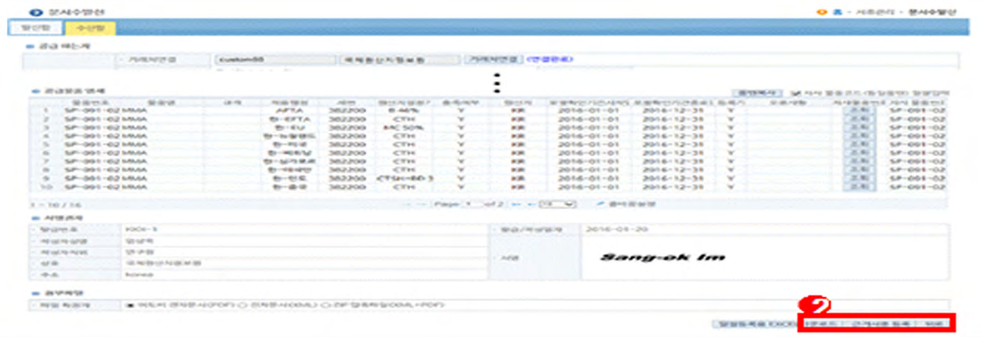

<STEP 3>

6. [거래정보>근거서류]메뉴에 수신한 원산지확인서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.